의 번 호

1699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0. 12. 3.(목)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2. 3.(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2. 14.(월)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O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과의 용어 일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
-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과의 용어 일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
-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다.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경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저촉사항 없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폐기물 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처리 신고자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 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 력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종</u> **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 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 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 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8 (제231회-본회의제3차부록)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